

<p>인 4·19國立墓地無償使用許可同意案이 提出되어 그 동안 各 委員들이 審議資料의 수집과 研究過程을 거친 바 있으며, 이번 第80回 臨時會 第1次 保健社會委員會에서 保社環境局長의 提案과 專門委員의 檢討를 듣고, 委員會에서 충분한 審査와 討議 끝에 全員一致로 可決되어 오늘 本會議에 報告드리게 되었습니다.</p> <p>그 內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, 1993年 4月에 4·19墓域 聖域化 作業의 一環으로서 國費 91億원 그리고 市費 70億원 等 總 161億원이 所要되어서 95年 4월에 完工되었으며, 國家報勳施設物管理 一元化計劃에 따라서 同 4·19施設物의 管理가 서울시에서 國家報勳處로 移管됨에 따라 4·19墓域 內의 서울시所有 土地와 國家所有 土地와의 交換節次가 앞으로 2年 이상이 所要되게 됨으로써 이 期間 동안의 管理主體가 애매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同意案을 市長이 提出하게 된 것입니다.</p> <p>방금 報告드린 內容과 같이 서울시 立場에서 는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으며, 우리 市가 占有하고 있는 國家所有財產과 맞바꾸는 과정에서 發生하는 모든 問題를 사전에 防止하고자 하는바, 그 妥當性과 合理性을</p>	<p>認定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아무쪼록 자세한 事項은 이미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参照하시고, 여러 同僚議員님들의 깊은 理解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4·19國立墓地無償使用許可同意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·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</p> <p>4·19묘역 성역화사업이 완료되어 동 묘역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 묘역 내 사유지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나, 국·공유지 교환에는 2年 정도가 소요되므로 교환전까지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주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무상사용허가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</p>					
무상사용허가 내용						
재 산 의 표 시			신청인	물건명칭	허가기간	비 고
종 류	소 재 지	면적(㎡)				
토 지	강북구 수유동 산 9-1일대	96,837	국 가	4·19	허가일로	국가보훈처에서는
건 물	"	2,136.3	보훈처장	국립묘지	부터 2년	3년을 허가 신청
기 타	"	-				
<p>8. 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 金庫에 關한 行政事務調查要求의 件(李廷義議員 外 53人 要求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5時 41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 金庫에 關한 行政事務調查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本 案件은 李廷義議員 外 53人으로부터</p>			<p>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 金庫에 關한 行政事務調查를 위해서 發議한 案件입니다.</p> <p>그러면 李廷義議員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李廷義議員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先輩·同僚議員 여러분, 새정치국민회의 所屬 財務經濟委員會 李廷義議員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 金庫에 關한 行政事務調查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</p>			